

고려아연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설명 자료

2024.02



부의안전

	안전	목적
제1호 의안	제50기 연결 및 고려아연 별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50기 재무제표 및 배당 승인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사업목적 수정 및 추가	사업목적 수정 및 추가
제2-2호 의안	주식발행 및 배정 표준정관 반영	표준정관 반영
제2-3호 의안	사채발행 표준정관 반영	표준정관 반영
제2-4호 의안	이사 및 이사회 개정상법 반영	개정상법 반영
제2-5호 의안	주식소각 개정상법 반영	개정상법 반영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기존 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재선임
제3-1호 의안	최윤범(사내이사)	재선임
제3-2호 의안	정태웅(사내이사)	신규선임
제3-3호 의안	장형진(기타비상무이사)	재선임
제3-4호 의안	김우주(기타비상무이사)	신규선임
제3-5호 의안	성용락(사외이사)	재선임
제3-6호 의안	김도현(사외이사)	재선임
제3-7호 의안	이민호(사외이사)	재선임
제3-8호 의안	황덕남(사외이사)	신규선임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기존 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
제4-1호 의안	성용락(사외이사)	재선임
제4-2호 의안	김도현(사외이사)	재선임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당기(2024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제1호 의안 :제50기 연결 및 고려아연 별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1.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 십억원)

		제50(당)기	제49(전)기
별도	매출	7,291	8,081
	매출원가	6,432	7,015
	판매비와관리비	152	135
	영업이익	707	931
	당기순이익	586	656
연결	매출	9,704	11,219
	매출원가	8,742	10,049
	판매비와관리비	302	251
	영업이익	660	911
	당기순이익	528	780

- 아연 LME 가격 급락(yoy -24%) 영향으로 연결 기준 매출액 전년대비 13.5% 감소한 9조 7,040억원 달성

2.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십억원)

		제50(당)기	제49(전)기
별도	자산	10,137	10,091
	유동자산	4,221	4,686
	현금 및 유가증권	2,103	2,439
	재고자산	2,118	2,247
	비유동자산	5,917	5,405
	부채	1,346	1,691
	유동부채	1,314	1,676
	비유동부채	32	15
연결	자본	8,791	8,400
	자산	12,051	12,098
	유동자산	5,571	6,071
	현금 및 유가증권	2,933	3,246
	재고자산	2,638	2,825
	비유동자산	6,480	6,027
	부채	2,407	2,866
	유동부채	1,903	2,319
연결	비유동부채	504	547
	자본	9,644	9,232

- HMG글로벌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5,270억원) 영향으로 별도 유동 자산 증가
- 니켈제련소를 건립하고 있는 캠코의 연결자회사 편입에 따른 연결 비유동자산 증가

제1호 의안 :제50기 연결 및 고려아연 별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제50기)	2022년 (제49기)	비 고
처분전이익잉여금	625,948	928,318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78,572	265,482	
중간배당	(198,632)	-	
당기순이익	585,595	656,194	
보험수리적손익	(39,587)	7,291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0	(649)	
이익잉여금처분액	356,637	649,746	
이익준비금	2,614	2,483	
해외투자적립금	130,000	130,000	
자원사업투자적립금	120,000	120,000	
기말배당	104,023	397,263	
총 현금배당	302,655 (중간: 198,632, 기말: 104,023)	397,263 (중간: -, 기말: 397,263)	
주당배당금 보통주 (원):	15,000 (중간: 10,000, 기말: 5,000)	20,000 (중간: -, 기말: 20,000)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69,311	278,572	

제1호 의안 :제50기 연결 및 고려아연 별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4. (참고자료) 영풍 기말배당 제안에 대한 의견 표명서 (단위 : 억원)

	고려아연제안(기말배당 5천원)	영풍제안(기말배당 1만원)
중간배당	1,986억원	1,986억원
기말배당	1,040억원	2,080억원
총배당금	3,027억원	4,067억원
배당성향(별도기준)	51.6%	69.4%
배당성향(연결기준)	57.4%	77.1%
자사주 취득/소각 결정	1,000억원	1,000억원
총주주환원금액	4,027억원	5,067억원
주주환원율(별도기준)	68.7%	86.4%
주주환원율(연결기준)	76.3%	96.0%

당사는 철강금속업계 주요 경쟁사들 보다 높은 배당성향과 주주환원율을 유지해오고 있었고 2023년 중간배당으로 1주당 10,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1,000억원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2023년 아연가격 하락 및 전기료 인상 등으로 연결기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각각 13.5%, 33.2%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주당 5,000원의 기말배당안을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3년 배당성향은 51.6%로 배당성향 30%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포함한 총 주주환원율은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68.7%를 기록하였습니다.

권유자 측에서 제안한 기말배당안 주당 1만원은 별도기준 배당성향 69.4%, 주주환원율 86.4%에 해당하며 연결기준으로는 배당성향 77.1%, 주주환원율 96.0%에 육박하고 있어 회사의 건전성 및 성장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당사는 권유자의 수정동의안 및 이에 대한 의견권대리행사 권유에 반대합니다.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1. 주요 변경내용

- 사업목적 추가
- 신주인수권, 일반공모증자 조항 일원화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표준정관에 맞게 변경
- 개정상법 규정 반영(이사의 책임 감면, 이사회결의 결의, 주식의 소각)

2. 변경목적

- 당사의 현 정관 제17조 및 제17조의2는 1990년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상장회사 표준정관 문구를 그대로 차용한 후 관련 법령, 제도 및 이에 따른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에도 전혀 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 당사의 현 정관이 현행 상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개정이 필요
- 당사는 현재의 관련 업계나 자본시장에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그 정관을 오랫동안 정비하지 않고 방치해 왔으므로, 제2-2호 의안뿐만 아니라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불명확한 규정들을 해소하고 정관을 최신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요 상장법인의 정관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안건별 변경사항

제2-1호 의안 : 사업목적 수정 및 추가 (제1장 총칙)

변경항목	주요변경사항
[제1장 총칙] 제2조 (목적)	- 기존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천연가스 수출입 및 판매업'으로 명확화 - 운영중인 LNG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력 일부의 판매를 위한 '전기공급 및 판매업' 추가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2-2호 의안 : 주식발행 및 배정 표준정관 반영 (제2장 주식)

변경항목	주요변경사항
[제2장 주식] 제17조 (신주인수권) 제17조의2 (일반공모증자 등)	- 제17조(신주인수권)와 제17조의2(일반공모증자) 조항을 현행 표준정관과 동일하게 1개 조항으로 통합하고 상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취지를 존중하여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2자배정을 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화 - 제3자배정에 따른 신주 발행한도(액면총액 400억원)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등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없이 현행 표준정관에 따라 상법,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문구 정비 (정관 최신화) - 제3자배정을 통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는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거나 불리해지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음

제2-3호 의안 : 사채발행 표준정관 반영 (제3장 사채)

변경항목	주요변경사항
[제3장 사채]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19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없이 현행표준정관에 따라 상법,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문구 정비(정관 최신화)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한도 변동 없음 1) 전환사채 발행한도 1,200억원 유지 2)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1,200억원 유지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2-4호 의안 : 이사 및 이사회 개정상법 반영 (제5장 이사와 이사회)

변경항목	주요변경사항
[제5장 이사와 이사회] 제31조의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제33조 (이사회 의장 및 결의)	- 개정상법 반영하여 이사 및 이사회 관련 조항 신설(회사의 윤리경영 강화) 1)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 신설 2) 이사회 결의 요건(과반 출석, 출석이사의 과반 찬성)을 명시한 조항에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는 이사 2/3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 추가 - 통신수단을 통하여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다는 조항의 문구 명확화 1) 기존의 '동시에 들을 수 있는 통신수단'을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으로 명확화 함

제2-5호 의안 : 주식소각 개정상법 반영 (제6장 계산)

변경항목	주요변경사항
[제6장 계산] 제41조의2 (주식의 소각)	- 2011년 상법개정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 정관상에 남아있어 해당 조항 삭제하여 개정된 상법 기준으로 정관 최신화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 이사회 구성 현황 (11명)

성명	구분	위원회 소속 여부	이사회 참석율 (2023년 기준)	임기	비고
최 윤 범	사내이사	-	N/A	~2024.03.	재선임 예정
박 기 덕	사내이사	-	N/A	~2025.03.	-
박 기 원	사내이사	-	N/A	~2025.03.	사임예정
장 형 진	기타비상무이사	-	N/A	~2024.03.	재선임 예정
최 내 현	기타비상무이사	-	N/A	~2025.03.	-
성 용 락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원위원회	100%	~2024.03.	재선임 예정
김 도 현	사외이사	보수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92%	~2024.03.	재선임 예정
이 민 호	사외이사	내부거래위원회	100%	~2024.03.	재선임 예정
김 보 영	사외이사	보수위원회	85%	~2025.03.	-
권 순 범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원위원회 보수위원회	100%	~2025.03.	-
서 대 원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원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100%	~2025.03.	-

위원회 소속 여부 및 이사회 참석율은 공시 및 홈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최윤범 (사내이사)

후보자 성명	최윤범
생년월일	1975.03.17
주된 직업	고려아연(주) 대표이사 회장
선임 구분	사내이사 (재선임)
최대주주와의 관계	계열회사 임원 (사내이사)
추천인	이사회
세부경력	2022년 ~ 현 재 : 고려아연(주) 대표이사 회장(현) 2021년 ~ 2022년 : 고려아연(주) 대표이사 부회장 2019년 ~ 2021년 : 고려아연(주) 대표이사 사장 2014년 ~ 2019년 : 호주 SMC 사장 2012년 ~ 2019년 : 고려아연(주) 부사장

후보자에 대한 보충설명

- 최윤범 후보자는 당사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전략 담당 임원을 역임하고, 호주 자회사인 SMC의 CEO로서 경영정상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최고 경영자로서 다양한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식견과 사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회사의 장기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내이사로 추천함.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정태웅 (사내이사)

후보자 성명	정태웅
생년월일	1967.11.06
주된 직업	고려아연(주) 사장
선임 구분	사내이사 (신규선임)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추천인	이사회
세부경력	2023년 ~ 현 재 : 고려아연(주) 사장(현) 2022년 ~ 2023년 : 고려아연(주) 자재구매본부장 2020년 ~ 2022년 : 고려아연(주) 전무 2012년 ~ 2019년 : 고려아연(주) 상무 2012년 ~ 2019년 : 고려아연(주) 부사장

후보자에 대한 보충설명

- 정태웅 후보자는 당사의 자재구매본부장을 역임하고,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고려아연의 제련사업부문 총괄로서 온산제련소 전체를 책임지고 있음. 향후에도 회사의 근본인 제련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와 신성장 동력사업 로드맵 구축 등에 기여, 당사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함.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장형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성명	장형진
생년월일	1946.06.06
주된 직업	고려아연(주)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구분	기타비상무이사 (재선임)
최대주주와의 관계	계열회사 임원 (기타비상무이사)
추천인	이사회
세부경력	2010년 ~ 현 재 : 고려아연(주) 기타비상무이사(현) 1983년 ~ 현 재 : 영풍정밀(주) 기타비상무이사(현) 1993년 ~ 2015년 : (주)영풍 회장

후보자에 대한 보충설명

- 장형진 후보자는 비철금속분야에서 많은 연륜과 높은 명망을 지녔으며, 재계에서 전경련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대내외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그동안 회사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 향후에도 산업, 기술 및 경영전반에서 회사성장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여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함.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김우주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성명	김우주
생년월일	1971.09.16
주된 직업	현대자동차(주) 전무
선임 구분	기타비상무이사 (신규선임)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추천인	이사회
세부경력	2023년 ~ 현 재 : 현대자동차(주) 기획조정실 기획조정1실 본부장(현) 2022년 ~ 2022년 : 현대자동차(주) 기획조정실 PMO 사업부장 2022년 ~ 2022년 : 현대자동차(주) 기획조정실 PMO 실장

후보자에 대한 보충설명

- 김우주 후보자는 현대자동차그룹 내 오랜기간 글로벌 투자 및 기획 업무 맡은 전문가로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1실장 (본부장),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사업부장을 역임하는 등 현대자동차그룹 내 주요 신사업 개발 및 투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를 이사회에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함.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 성용락 (사외이사)

후보자 성명	성용락
생년월일	1958.12.26
주된 직업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선임 구분	사외이사 (재선임)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추천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
세부경력	2016년 ~ 현 재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현) 2014년 ~ 2016년 : 한국예탁결제원 비상임이사 2009년 ~ 2013년 : 감사원 사무총장 2008년 ~ 2009년 : 감사원 제1사무차장

후보자에 대한 보충설명

- 성용락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장 직무대행 등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이사회에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더불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여 회사의 성장과 주주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함.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 김도현 (사외이사)

후보자 성명	김도현
생년월일	1958.12.26
주된 직업	국민대학교 교수
선임 구분	사외이사 (재선임)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추천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
세부경력	2006년 ~ 현 재 :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현) 2021년 ~ 현 재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장(현) 2014년 ~ 2015년 :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2008년 ~ 2014년 : 기초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보충설명

- 김도현 후보자는 대학교수로서 다년간 교수로 재직했던 많은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그동안 축적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 개선과 전략적 투자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 윤리경영에 기반한 경영사안들을 의결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함.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7호 의안 : 이민호 (사외이사)

후보자 성명	이민호
생년월일	1965.02.07
주된 직업	법무법인 율촌 ESG연구소장
선임 구분	사외이사 (재선임)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추천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
세부경력	2020년 ~ 현 재 : 법무법인 율촌 ESG 연구소장(현) 2019년 ~ 2023년 :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겸임교수 2018년 ~ 2023년 : 환경영향평가학회 부회장, 감사 2016년 ~ 2017년 :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2014년 ~ 2015년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후보자에 대한 보충설명

- 이민호 후보자는 공학박사로서의 전문성과 환경부의 주요 직위에서 수십년간 행정가로 근무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ESG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함.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8호 의안 : 황덕남 (사외이사)

후보자 성명	황덕남
생년월일	1957.05.03
주된 직업	변호사
선임 구분	사외이사 (신규선임)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추천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
세부경력	2022년 ~ 현 재 : 롯데웰푸드 사외이사(현) 2015년 ~ 2023년 :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2017년 ~ 2022년 : 하나은행 사외이사 2012년 ~ 2017년 : 한국법학원 상임이사 2012년 ~ 2014년 :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보충설명

- 황덕남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등의 법관, 그리고 청와대 민정실 법무비서관 등 오랜 공직생활과 법률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또한 현재 인권 및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어 회사의 기업윤리경영과 주주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함.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성용락 (사외이사)

후보자 성명	성용락
생년월일	1958.12.26
주된 직업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선임 구분	사외이사 (재선임)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추천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
세부경력	2016년 ~ 현 재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현) 2014년 ~ 2016년 : 한국예탁결제원 비상임이사 2009년 ~ 2013년 : 감사원 사무총장 2008년 ~ 2009년 : 감사원 제1사무차장

후보자에 대한 보충설명

- 성용락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장 직무대행 등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이사회에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더불어 이사회에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여 회사의 성장과 주주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김도현 (사외이사)

후보자 성명	김도현
생년월일	1958.12.26
주된 직업	국민대학교 교수
선임 구분	사외이사 (재선임)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추천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
세부경력	2006년 ~ 현 재 :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현) 2021년 ~ 현 재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장(현) 2014년 ~ 2015년 :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2008년 ~ 2014년 : 기초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보충설명

- 김도현 후보자는 대학교수로서 다년간 교수로 재직했던 많은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그동안 축적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 개선과 전략적 투자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 윤리경영에 기반한 경영사안들을 의결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 목적 : 2024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 (100억 원)

2. 당기 및 전기 보수한도

	당기 (2024년)	전기 (2023년)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	13명 (7명)	11명 (6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8억 원
최고한도액	100억 원	100억 원

3. 참고사항

전기(제50기, 2023년)의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023년 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개인 성과급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024년 2월 지급예정으로 개인 성과급 미포함.

Appendix (정관 변경 세부 내용)

제2-1호 의안 : 사업목적 수정 및 추가 (제1장 총칙)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44. (생 략) <u>45. 천연가스 수출입업</u> <u>46. 전 각호의 사업에 부대 관련한 일체의 사업</u>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44. (좌 동) <u>45. 천연가스 수출입 및 판매업</u> <u>46. 전기공급 및 판매업</u> <u>47. 전 각호의 사업에 부대 관련한 일체의 사업</u>	- 천연가스 관련 업의 명확화 - 전기공급 및 판매업 추가

Appendix (정관 변경 세부 내용)

제2-2호 의안 : 주식발행 및 배정 표준정관 반영 (제2장 주식)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u>제17조 (신주인수권)</u> ① <u>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u> <u>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u> ② <u>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u>	<u>제17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u> ① <u>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u> 1. <u>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u> 2. <u>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 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u> 3. <u>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u> ② <u>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u>	- 신주인수권과 일반공모증자 조항을 현행표준정관과 동일하게 1개 조항으로 통합 -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없이 현행표준정관에 따라 상법,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문구 정비 (정관 최신화)

Appendix (정관 변경 세부 내용)

제2-2호 의안 : 주식발행 및 배정 표준정관 반영 (제2장 주식)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1. 상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상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 설)	1. <u>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u> 2. <u>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u> 3. <u>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u> 4. <u>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u>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신주인수권과 일반공모증자 조항을 현행표준정관과 동일하게 1개 조항으로 통합 -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없이 현행표준정관에 따라 상법,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문구 정비 (정관 최신화)

Appendix (정관 변경 세부 내용)

제2-2호 의안 : 주식발행 및 배정 표준정관 반영 (제2장 주식)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 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신주인수권과 일반공모증자 조항을 현행표준정관과 동일하게 1개 조항으로 통합 -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없이 현행표준정관에 따라 상법,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문구 정비 (정관 최신화)

Appendix (정관 변경 세부 내용)

제2-2호 의안 : 주식발행 및 배정 표준정관 반영 (제2장 주식)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7조의2 (일반공모증자 등)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및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액면가액이 4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이사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의 결의로써 정한다.	(삭 제)	- 신주인수권과 일반공모증자 조항을 현행표준정관과 동일하게 1개 조항으로 통합 -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없이 현행표준정관에 따라 상법,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문구 정비 (정관 최신화)

Appendix (정관 변경 세부 내용)

제2-3호 의안 : 사채발행 표준정관 반영 (제3장 사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u>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1,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u> ② <u>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u>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u>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1,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u> 1. <u>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 2. <u>제17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 ② <u>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u>	-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없이 현행표준정관에 따라 상법,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문구 정비(정관 최신화)

Appendix (정관 변경 세부 내용)

제2-3호 의안 : 사채발행 표준정관 반영 (제3장 사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③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 총액 중 600억원을 보통주식으로, 6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주식의 액면총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u> ④ <u>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화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u> ⑤ <u>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u> (신 설)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600억원을 보통주식으로, 6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u> ⑤ <u>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u> ⑥ <u>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u>	-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없이 현행표준정관에 따라 상법,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문구 정비(정관 최신화)

Appendix (정관 변경 세부 내용)

제2-3호 의안 : 사채발행 표준정관 반영 (제3장 사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9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u>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u> ② <u>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u>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u>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1,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u>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7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없이 현행표준정관에 따라 상법,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문구 정비(정관 최신화)

Appendix (정관 변경 세부 내용)

제2-3호 의안 : 사채발행 표준정관 반영 (제3장 사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③ <u>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600억원을 보통주식으로, 600억 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u> ④ <u>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u>	1. <u>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u> 2. <u>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u> 3. <u>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u> ③ <u>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u> ④ <u>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600억원을 보통주식으로, 6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u>	-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없이 현행표준정관에 따라 상법,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문구 정비(정관 최신화)

Appendix (정관 변경 세부 내용)

제2-3호 의안 : 사채발행 표준정관 반영 (제3장 사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 설)	⑤ <u>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u> <u>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u>	-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없이 현행표준정관에 따라 상법,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문구 정비(정관 최신화)

Appendix (정관 변경 세부 내용)

제2-4호 의안 : 이사 및 이사회 개정상법 반영 (제5장 이사와 이사회)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1조의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u>(신 설)</u>	제31조의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u>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 개정상법 반영하여 이사 및 이사회 관련 예외 조항 신설(회사의 윤리경영 강화)
제33조 (이사회의 의장 및 결의) 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대행하고, 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사장, 사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u>이 때 모든 이사가 동시에 들을 수 있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u>	제33조 (이사회의 의장 및 결의) 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대행하고, 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사장, 사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u>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u>	

Appendix (정관 변경 세부 내용)

제2-4호 의안 : 이사 및 이사회 개정상법 반영 (제5장 이사와 이사회)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개정상법 반영하여 이사 및 이사회 관련 예외 조항 신설(회사의 윤리경영 강화)

Appendix (정관 변경 세부 내용)

제2-5호 의안 : 주식소각 개정상법 반영 (제6장 계산)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u>제41조의2 (주식의 소각)</u> ① <u>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u>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u>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격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u>이사회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u> <u>이전이어야 한다.</u> 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u>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u> <u>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u> <u>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u>	(삭 제)	- 개정상법 반영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 삭제(정관 최신화)